##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1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위성곤·윤재갑·김원이

박상혁ㆍ허 영ㆍ오영훈

송재호 · 이탄희 · 이개호

양경숙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은 소유권보존등 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 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 어 시행예정임.

그러나 읍·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·건물을 포함한 반면 행정시 내 동(洞)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동법 적용대상에 행정시를 포함하여 행정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##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"시 지역"을 "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 한 같다) 지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적용 지역 및 대상) 이 법	제5조(적용 지역 및 대상)
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	
각 호와 같다. 다만, 수복지구	<u>.</u>
는 제외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	2
만의 <u>시 지역</u> : 농지 및 임야	<u>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</u>
	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
	위한 특별법」제10조제2항에
	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
	<u>같다) 지역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